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4-29

서 울 행 정 법 원

제 6 부

판 결

사 건 2019구합7290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redacted]

피 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redacted]

담당변호사 [redacted], [redacted], [redacted]

변 론 종 결 2021. 2. 26.

판 결 선 고 2021. 3.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1. 3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4-29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7. 29. 설립되어 자동차 도·소매업, 자동차 정비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3. 10. 28. [redacted]구 B 대 422.3㎡, C 대 410.5㎡(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각 2013. 8.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3. 10. 28.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이 대도시에 법인의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사건 토지의 과세표준 19,677,590,900원에 구 지방세법(2013. 12. 26. 법률 제12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에서 정한 중과세율 8%[1]를 적용하여 계산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 합계 1,849,693,540원(이하 '①취득세 등'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0. 1.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지하 3층, 지상 6층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를 완료하였고, 2014. 12. 1.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2014. 11. 17.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아래 1), 2)항과 같이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건물 6층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 아래 3)항과 같이 추가로 취득세 등을 신고하여 2014. 11. 28. 위 각 취득세 등을 모두 납부하였다.

1)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취득이 대도시에 법인의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1 내지 5층) 또는 법인의 본점을 전입하는 경우(6층)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건물 전체의

1)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조 제7호 (나)목에서 정한 표준세율(4%)의 100분의 300인 12%에서 중과기준세율(2%)의 100분의 200인 4%를 뺀 세율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4-29

과세표준 5,815,822,967원에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2항에서 정한 중과세율 4.4%[2]를 적용하여 계산한 취득세 등 295,443,800원(이하 '②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건물 6층의 취득이 대도시에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구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와 법인의 지점을 설치하거나 본점을 전입하는 경우(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모두 해당하므로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6항에서 정한 중과세율 8.4%[3]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고, 위 1)항에서 이 사건 건물 전체에 대하여 이미 중과세율 4.4%를 적용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추가로 이 사건 건물 중 6층의 과세표준인 659,995,464원에 대하여 세율 4%(= 8.4% - 4.4%)를 적용하여 계산한 취득세 등 29,039,790원(이하 '③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건물 6층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의 취득이 대도시에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구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와 법인의 본점을 전입하는 경우(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모두 해당하여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6항에서 정한 중과세율 12%[4]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고, 위 다.항에서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대하여 이미 중과세율 8%를 적용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추가로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건물 6층의 부속토지 과세표준인 2,245,872,209원에 대하여 세율 4%(= 12% - 8%)를 적용하여 계산한 취득세 등 98,818,360원(이하 '④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2)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조 제3호에서 정한 표준세율(2.8%)의 100분의 300인 8.4%에서 중과기준세율(2%)의 100분의 200인 4%를 뺀 세율
3)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조 제3호에서 정한 표준세율(2.8%)의 100분의 300인 8.4%
4)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조 제7호 (나)목에서 정한 표준세율(4%)의 100분의 300인 12%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4-29

바. 그런데 원고는 2018. 10. 4. 피고에게,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단서는 대도시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이하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을 취득세 중과의 예외로 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5. 6. 30. 대통령령 제26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제1항 제6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이하 '유통산업'이라 한다)을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은 유통산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본문에서 정한 중과세율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중과세율이 아닌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①, ②, ③, ④취득세 등을 감경하여 달라는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사. 이에 피고는 2018. 11. 20.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거쳐 2018. 11. 30. '이 사건 건물의 1 내지 4층은 자동차 판매업에 사용되고 있어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인 유통산업에 제공되는 장소이나, 5, 6층은 대표이사실, 총무과, 인사팀 등 본점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유통산업 이외의 다른 업종에도 겸용하고 있으므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제공되는 장소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이 사건 건물 1 내지 4층 및 그 부속토지에 관한 부분은 원고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취득세 등을 감액경정하였으나,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이라 한다).

(단위: 원)

구분	취득 부동산	과세표준	신고납부세액	산출세액	감면세액
①취득세 등	이 사건 토지	19,677,590,900	1,849,693,540	1,146,668,140	703,025,400
②취득세 등	이 사건 건물	5,815,822,967	295,443,800	212,330,530	83,113,27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4-29

③취득세 등	이 사건 건물 6층	659,995,464	29,039,790	29,039,790	0
④취득세 등	이 사건 건물 6층 부속토지	2,245,872,209	98,818,360	98,818,360	0

아. 원고는 2019. 2. 22.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7. 5.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한 분류기준에 의하면 자동차를 판매하면서 그에 따른 수리 · 유지를 병행하는 원고의 영업은 수리업으로 분류되지 아니하고 그 전부가 도 · 소매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영업은 그 전부가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인 유통산업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자동차 판매업에 사용하고 있는 이 사건 건물 1 내지 4층뿐만 아니라 원고가 본점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사건 건물 5, 6층에 대하여도 취득세 중과세율이 아닌 표준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2)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3항은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만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을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과 그 외의 업종에 겸용하는 경우 그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므로, 자동차 판매업과 자동차 정비업을 겸용하고 있는 이 사건 건물 5, 6층 전체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다. 따라서 피고가 합리적인 안분기준을 제시하지 않는 한 이 사건 건물 5, 6층 전체에 취득세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4-29

액을 산출하여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설령 취득세 중과세율을 일부 적용하더라도,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45조 제5항을 적용하여 자동차 판매업과 자동차 정비업의 매출액 비율에 따라 표준세율 적용 부분과 중과세율 적용 부분을 안분하여 세액을 산출하여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아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위에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원고는 2014. 11. 17.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취득세 등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건물 1, 2층은 자동차 전시 · 판매장으로, 3, 4, 5층은 영업사원 사무실로, 6층은 대표이사실 및 경영지원본부로 사용할 예정이라는 이용계획을 제출하였다.

2)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한 이후인 2018. 11. 20.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한 결과 이 사건 건물이 아래와 같은 용도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층	용도	면적(㎡)
6	대표이사실 및 경영지원본부	238.72
5	총무팀, 인사팀, 회계팀 등 사무실	299.13
4	영업사원 사무실	363.47
3	영업사원 사무실	410.12
2	자동차 전시·판매장	382.02
1	자동차 전시·판매장	410.12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4-29

합계	2,103.58

3) 또한 피고는 2019. 3. 14. 원고의 본점으로 등기된 [redacted]구 D (이하 '등기부상 본점'이라 한다)을 방문하여 현장조사를 하였고, 원고의 등기부상 본점은 자동차 정비업을 주된 업무로 하여 자동차 정비소와 그 부품 보관을 위한 장소 및 고객서비스 시설 등으로 사용되고 있고, 지점장 1명, 정비사 7명, 고객접수원 3명, 고객안내원 1명, 보증담당 직원 1명, 부품담당 직원 1명의 합계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할 당시부터 본점의 업무 기능을 이 사건 건물로 이전하여 사실상 이 사건 건물을 본점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원고의 등기부상 본점 건물의 구체적인 용도는 아래와 같다.

층	용도
4	창고, 기계실, 옥상
3	자동차부품실, 보증서 서고, 서버실, 지점장실, 라커룸, 회의실
2	고객휴게실 및 대기실
1	자동차 정비소, 고객접수 창구

4) 원고는 자동차 판매업과 자동차 정비업에 대하여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각 영업을 수행하고 있다.

라. 판단

1) 이 사건의 판단범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6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사용되고 있어 중과세율이 아닌 표준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감액경정을 구한다'라고 주장하였을 뿐, 이 사건 건물 6층에 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4-29

하여는 감액을 주장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 6층 및 그 부속토지에 관한 취득세 등에 대하여는 원고가 경정청구를 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 취소의 소로써 다툴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피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 본다.

감액경정청구를 받은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객관적으로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확인할 의무가 있으므로, 통상의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도 심판의 대상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인 존부이다. 따라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인정이 위법이라고 내세우는 개개의 위법사유는 자기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한 것이므로, 감액경정청구를 함에 있어 개개의 위법 사유에 대하여 모두 주장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감액경정청구 당시 주장하지 아니하였던 사항도 그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새로이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1342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하면서 그 청구취지란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표준세율로 경정하여 주기 바란다'라는 취지를 명시하고, 원고가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으로 ①, ②, ③, ④취득세 등을 모두 기재한 뒤 위 각 취득세 등의 납부확인서를 모두 첨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전체의 취득세 등에 대하여 감액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전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4-29

관적인 존부가 이 사건의 심판대상이 되고, 원고는 이 사건 경정청구 당시 주장하지 아니하였던 사항도 이 사건에서 새로이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건물 6층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세 등에 대하여도 감액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가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만을 영위하고 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본문은 법인이 대도시에 본점을 설립하거나, 지점 등을 설치하거나, 본점, 지점 등을 전입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 대도시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을 취득세 중과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을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1호는 '유통산업'이란 공산품 등의 도매 · 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 · 배송 · 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 · 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이 사건 건물 1 내지 4층을 자동차 전시 · 판매장 및 영업사원 사무실로 사용하여 유통산업인 자동차 판매업에 사용하고 있고, 등기부상 본점 건물은 유통산업이 아닌 자동차 정비업에 사용하고 있는 사실, 자동차 판매업과 자동차 정비업에 대하여 각 별개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원고가 자동차 정비업에 제공하고 있는 시설 및 인력의 규모나 해당 매출액(원고 주장에 따르면 2016년 약 39억, 2015년 약 22억, 2014년 약 18억)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영위하고 있는 자동차 정비업이 단순히 자동차 판매업을 위한 보조적인 활동이라거나, 자동차 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4-29

매업을 위한 용역을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다고는 보기 어렵다. 원고가 이 사건 건물 5, 6층을 원고의 대표이사실, 경영지원본부, 총무팀, 인사팀, 회계팀 등 위 각 영업 전반을 총괄하는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이 사건 건물 5, 6층은 원고의 영업 전반에 대한 관리 및 지원 등의 업무에 함께 사용되는 것으로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인 자동차 판매업과 그 외 업종인 자동차 정비업에 겸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한편 원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한 분류기준에 의하면 자동차를 판매하면서 그에 따른 수리 · 유지를 병행하는 것은 수리업으로 분류되지 아니하고 그 전부가 도 · 소매업으로 분류되므로, 원고의 영업은 그 전부가 유통산업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구 한국표준산업분류(2017. 1. 13. 통계청 고시 제2017-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는 통계법 제22조에 근거하여 산업관련 통계자료의 정확성, 비교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한 분류기준을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의 해당 여부 판단이나 유통산업 해당 여부 판단에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다. 또한 각종 조세 관련 법령에서 업종의 분류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도록 한 경우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개별 법령에서 직접 업종을 분류하는 것보다는 통계청장이 기존에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인데(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두29192 판결 참조), 이와 달리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각 호는 직접 개별 법령에 따른 업종을 열거하여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한 분류기준을 적용하여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해당 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4-29

부를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이 사건 건물 5, 6층 전체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3항은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을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겸용하는 경우'[제1호 (다)목],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겸용하는 경우'[제2호 (나)목] 등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제2항 본문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따름이다. 따라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등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른 업종에 겸용하는 등의 경우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사용하는 부분과 그 외의 업종에 사용하는 부분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다면 그 외의 업종에 사용하는 부분만이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되나, 이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 그 겸용하는 부분 전체가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3항의 적용을 받게 되어 제2항 본문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건물 5, 6층을 원고의 대표이사실, 경영지원본부, 총무팀, 인사팀, 회계팀 등 위 각 영업 전반을 모두 총괄하는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 이에 자동차 판매업에 사용되는 면적과 자동차 정비업에 사용되는 면적을 물리적으로 구분할 수 없는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건물 5, 6층은 그 전체가 취득세 중과세율의 적용 대상이 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사용되는 면적과 그 외의 업종에 사용되는 면적을 물리적으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4-29

45조 제5항을 적용하여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과 그 외의 업종의 매출액 비율에 따라 표준세율 적용 부분과 중과세율 적용 부분을 안분하는 것이 조세 형평에 부합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두10489 판결 등 참조), 취득세와 등록면허세가 그 과세대상을 달리하는 별개의 세목에 해당하는 이상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45조 제5항을 취득세의 세율을 산정하는 경우에 준용하거나 유추적용할 수는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4-29

[별지]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2013. 12. 26. 법률 제12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이나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1천분의 20(이하 "중과기준세율"이라 한다)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 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4-29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대도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이나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1천분의 20(이하 "중과기준세율"이라 한다)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4-29

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대도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본문을 적용한다.

1.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직접 사용하여야 하는 기한 또는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겸용이 금지되는 기간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겸용하는 경우
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나.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겸용하는 경우

⑥ 제1항과 제2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에 대한 취득세율은 제16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4-29

제11조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5. 6. 30. 대통령령 제26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① 법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6.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유통자회사 및 「축산법」에 따른 가축시장

제45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⑤ 법 제28조제2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28조제2항 각 호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이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법인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직전 사업연도(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해당 사업연도에도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에서 제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이하 이 항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과 그 외의 업종(이하 이 항에서 "대도시 중과 대상 업종"이라 한다)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가목 및 나목과 같이 산출한 후 그에 따라 안분하여 과세한다. 다만, 그 다음 사업연도에도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유형고정자산가액의 비율에 따른다.

1.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과 대도시 중과 대상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
2.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을 대도시 중과 대상 업종으로 변경하는 경우
3.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대도시 중과 대상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과 대도시 중과 대상 업종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의 계산식>

가. 해당 법인 중과 대상 업종 매출비율(퍼센트)

$$\text{해당 법인 중과 대상 업종 매출비율(퍼센트)} = \frac{\text{해당 법인 중과 대상 업종 산정 매출액*}}{\text{(해당 법인 중과 제외 업종 산정 매출액**+ 해당 법인 중과 대상 업종 산정 매출액*)}} \times 100$$

* 해당 법인 중과 대상 업종 산정 매출액 = (해당 법인 중과 대상 업종 매출액 × 365일) / 해당 법인 중과 대상 업종 운영일수

**해당 법인 중과 제외 업종 산정 매출액 = (해당 법인 중과 제외 업종 매출액 × 365일) / 해당 법인 중과 제외 업종 운영일수

나. 해당 법인 중과 제외 업종 매출비율(퍼센트)

$$\text{해당 법인 중과 제외 업종 매출비율(퍼센트)} = 100 - \text{해당 법인 중과대상 업종 매출비율(퍼센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4-29

▣ 유통산업발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세움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가공물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 및 공산품의 도매・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배송・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

▣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

①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 직업, 질병·사인(死因)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청장은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를 작성하는 때에는 통계청장이 제1항에 따라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라야 한다. 다만, 통계의 작성목적상 불가피하게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끝.